

定 款

制定 : 1984.3.26	13次 改正 : 2000.3.17
1次 改正 : 1986.2.18	14次 改正 : 2001.3.16
2次 改正 : 1988.5.12	15次 改正 : 2002.3.8
3次 改正 : 1988.9.13	16次 改正 : 2004.3.12
4次 改正 : 1988.12.2	17次 改正 : 2005.3.11
5次 改正 : 1989.8.14	18次 改正 : 2006.3.10
6次 改正 : 1991.3.15	19次 改正 : 2008.3.14
7次 改正 : 1992.3.20	20次 改正 : 2010.3.12
8次 改正 : 1994.7.7	21次 改正 : 2011.8.31
9次 改正 : 1996.3.15	22次 改正 : 2012.3.23
10次 改正 : 1997.3.21	23次 改正 : 2013.3.22
11次 改正 : 1998.3.27	24次 改正 : 2014.3.21
12次 改正 : 1999.3.20	25次 改正 : 2015.3.20
	26次 改正 : 2016.3.18
	27次 改正 : 2017.3.24

前 文

회사는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생존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하여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회사는 구성원이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은 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

회사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간다.

회사는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회사는 이해관계자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017. 3. 24. 전문 개정)

第 1 章 總 則

第 1 條(商號)이 會社는 "SK 텔레콤株式會社(이하 "會社"라 한다)"라 하며, 한글로는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라 하고 英文으로 SK Telecom Co., Ltd.로 表記한다. (1997. 3. 21 本 條 改正)

第 2 條(目的)①會社는 電氣通信事業의 合理的 經營과 電氣通信技術의 振興을 圖謀하며 國民의 便益을 增進하고 公共福祉의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1992. 3. 20 本 項 改正)

②會社는 前項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情報通信事業(2000. 3. 17 本 號 改正)
2. 端末機賣買 및 賃貸業
3. 뉴미디어事業
4. 廣告業
5. 通信販賣業

6. 不動產業(개발, 관리, 임대 등) 및 動產 賃貸業(2010. 3. 12 本 號 改正)
7. 1 호내지 4 호관련 研究 및 技術開發
8. 1 호내지 4 호관련 海外事業 및 輸出·入業
9. 1 호내지 4 호관련 製造 및 流通業
10. 여행업(2006. 3. 10 本 號 改正)
11. 전자금융업(2008. 3. 14 本 號 改正)
12. 영화업(제작, 수입, 배급, 상영)(2008. 3. 14 本 號 新設)
13.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2010. 3. 12 本 號 新設)
14. 전기공사업(2010. 3. 12 本 號 新設)
15. 정보통신공사업(2010. 3. 12 本 號 新設)
16.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서비스업(2010. 3. 12 本 號 新設)
17. 國內의 자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관리, 운영 등을 통한
관련사업(2011. 8. 31 本 號 新設)
18.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업(2013. 3. 22 本 號 新設)
19. 수출·입업 및 수출·입 중개·대행업(2015. 3. 20 本 號 新設)
20. 지능형전력망사업 등 전기사업(2016. 3. 18 本 號 改正)
21. 기타 위와 關聯된 附帶事業(2016. 3. 18 本 號 改正)

③會社는 前項의 業務를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業務의 一部를 理事會 決議에 의하여 委託할 수 있다.(1989. 8. 14 本 項 新設)

第 3 條(本社 및 支社)會社의 主된 事業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必要한 곳에 下部組織을 들 수 있다.

第 4 條(公告方法)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telecom.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14. 3. 21. 本條 改正)

第 2 章 株 式

第 5 條(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는 貳億 貳仟萬株로 한다.(2000. 3. 17 本條 改正)

第 6 條(壹株의 金額)會社가 發行하는 株式 壹株의 金額은 五百원으로 한다. (2000. 3. 17 本條 改正)

第 7 條(株式 및 株券의 種類)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種類는 記名式 普通株式과 記名式 優先株式으로 하고, 株券의 種類는 壹株券, 五株券, 壹拾株券, 五拾株券, 壹百株券, 五百株券, 壹仟株券, 壹萬株券의 8 種으로 한다.

(1989. 8. 14 本條 改正)

第 8 條(優先株式의 數와 內容)①會社가 發行할 優先株式은 議決權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數는 550 萬株로 한다.(1997. 3. 21 本項 改正)

②優先株式에 대하여는 額面金額을 기준으로 하여 年 9%이상 25% 이내에서 發行 時에 理事會가 優先配當率을 정한다.(1997. 3. 21 本項 改正)

③普通株式의 配當率이 優先株式 配當率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普通株式과 동일한 比率로 참가시켜 配當한다.

(1997. 3. 21 本 項 新設)

④優先株式에 대하여 어느 事業年度에 있어서 소정의 配當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累積된 未 配當 分을 다음 事業年度의 配當 時에 우선하여 配當한다. (1997. 3. 21 本 項 改正)

⑤優先株式에 대하여 당해 事業年度 利益에서 소정의 配當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優先株式에 대하여 소정의 配當을 하지 아니한다는 決議가 있는 總會의 다음 總會부터 그 優先配當을 한다는 決議가 있는 總會의 終了時까지 議決權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89. 8. 14 本 項 新設)

⑥會社가 有償增資 또는 無償增資를 實施하는 경우 優先株式에 대한 新株의 配當은 有償增資의 경우에는 普通株式으로 無償增資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種類의 株式으로 한다. (1997. 3. 21 本 項 新設)

⑦優先株式의 存續期間은 發行日로부터 10 年으로 하고 이 期間 滿了와 同時에 普通株式으로 轉換된다. 그러나, 위 期間 中 소정의 配當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配當을 完了할 때까지 그 期間을 延長한다. 이 경우 轉換으로 인하여 發行하는 株式에 대한 利益의 配當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의 規定을 準用한다. (1997. 3. 21 本 項 新設)

第 9 條(株券 不所持)株主의 請求가 있을 경우에는 그 所有하는 株式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하여 株券을 發行하지 아니한다.

第 10 條(新株引受權)①會社の 株主는 新株發行에 있어서 그가 所有한 株式數에 比例하여 新株의 配定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그러나, 株主가 新株引受權을 拋棄 또는 喪失 하거나 新株配定에서 端株가 發生하는 경우에는 그 處理方法은 理事會의 決議로 定한다.(1989. 8. 14 本 項 改正)

②第 1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海外證券發行規程에 의하여 株式預託證書(DR)를 發行하거나 公募增資를 통한 新株發行이 있는 경우에 新株引受權의 決定 其他 新株發行에 관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에 의한다. (1989. 3. 20 本 項 改正)

第 10 條의 2(新株의 配當起算日)會社가 有償增資, 無償增資 및 株式 配當에 의하여 新株를 發行하는 경우 新株에 대한 利益의 配當에 관하여는 新株를 發行한 때가 속하는 營業年度의 直前 營業年度末에 發行된 것으로 본다. (1996. 3. 15 本 條 新設)

第 10 條의 3(株式買受選擇權)①會社는 任職員 또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關係會社의 任職員(以下 本 條에서 “任職員”이라한다)에게 關係法令이 정하는 限度까지 株式買受選擇權을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하여 附與할 수 있다. 다만, 關係法令이 정하는 限度까지 任職員에게 理事會의 決議로써 株式買受選擇權을 附與할 수 있다. (2002. 3. 8 本 項 改正)

②株式買受選擇權을 附與받을 任職員은 會社의 利潤極大化나 技術革新 等に 寄與하였거나 寄與할 能力을 갖춘 任職員으로 하되 關係法令에서 株式買受選擇權을 附與받을 수 없는 者로 規定한 任職員은 除外한다.(2002. 3. 8 本 項 改正)

1. (2002. 3. 8 本 項 削除)

2. (2002. 3. 8 本 項 削 除)

3. (2002. 3. 8 本 項 削 除)

③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로 交付할 株式은 記名式 普通株式으로 한다.
(2000. 3. 17 本 項 改 正)

④ 株式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分の 5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分の 1 을 초과할 수 없다. (2017. 3. 24. 本 項 改 正)

⑤ (2000. 3. 17 削 除)

⑥ 株式買受選擇權은 이를 行使할 수 있는 날로부터 7 年의 範圍內에서 株主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定한 期間동안 行使할 수 있다.(2001. 3. 16 本 項 改 正)

⑦ 다음 各 號의 1 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理事會의 決議로 株式買受選擇權의 附與를 取消할 수 있다.(2000. 3. 17 本 項 改 正)

1. 當該 任職員이 株式買受選擇權을 附與받은 날로부터 3 年이내에 任意로 退任하거나 退職한 경우(2000. 3. 17 本 號 改 正)

2. 當該 任職員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會社에 損害를 입힌 경우
(2000. 3. 17 本 號 改 正)

3. 其他 株式買受選擇權 附與契約에서 정한 取消事由가 發生한 境遇
(2000. 3. 17 本 號 改正)

第 10 條의 4(株式消却)①會社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株主에게 配當할 利益으로 理事會의 決議에 의해 株式을 消却할 수 있다.

②消却할 株式의 種類, 數量, 取得價額의 總額, 株式買受期間과 方法 等 株式消却의 具體的인 事項은 關聯 法令에 따라 理事會의 決議로써 定한다.
(2001. 3. 16 本 條 新設)

第 11 條(時價發行)①會社는 新株를 發行함에 있어서 그 一部 또는 全部를 時價로 發行할 수 있으며, 이때에 그 發行價額은 理事會의 決議로 定한다.
(1989. 8. 14 本 項 改正)

②第 1 項의 경우 理事會는 第 10 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時價로 發行하는 新株式을 자본시장과 金融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하여 募集하거나 引受人에게 引受케 할 수 있다. (2012. 3. 23 本 項 改正)

第 12 條(名義改書 代理人)①會社는 株式의 名義改書代理人을 둔다.
(1989. 8. 14 本 項 改正)

②名義改書代理人 및 그 業務取扱場所와 代行業務의 範圍는 理事會의 議決로 定하고 이를 公告한다.(1989. 8. 14 本 項 改正)

③會社는 會社의 株主名簿 또는 그 複本을 名義改書代理人의 事務取扱場所에 備置하고 株式의 名義改書, 質權의 登錄 또는 抹消, 株券의 發行, 申告의 接受, 其他 株式에 관한 事務를 名義改書代理人으로 하여금 代行케 한다. (1989. 8. 14 本 項 改正)

④第 3 項의 事務取扱에 關한 節次는 名義改書代理人에 關한 관련 規定에 따른다.(2012. 3. 23 本 項 改正)

第 13 條(株主등의 住所, 姓名 및 印鑑申告 또는 署名申告)①株主와 登錄質權者는 그 姓名, 住所 및 印鑑 또는 署名을 第 12 條의 名義改書代理人에게 申告하여야 한다.(1996. 3. 15 本 項 改正)

②外國에 居住하는 株主와 登錄質權者는 大韓民國內에 通知를 받을 場所와 代理人을 定하여 申告하여야 한다.(1989. 8. 14 本 項 改正)

③第 1 項 및 第 2 項의 事項에 變動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1989. 8. 14 本 項 改正)

④前 各項의 登錄을 懈怠함으로 인하여 생긴 損害에 對하여는 會社는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 14 條(株主名簿의 閉鎖 및 基準日)①會社는 每年 1 月 1 日부터 1 月 31 日까지 株式의 名義改書, 質權의 登錄 또는 抹消와 信託財産의 表示 또는 抹消를 停止한다.(2001. 3. 16 本 項 改正)

②會社는 每 決算期 最終日의 株主名簿에 記載되어 있는 株主로 하여금 定期株總時 그 權利를 행사하게 한다.(2001. 3. 16 本 項 改正)

③臨時株主總會의 召集 其他 必要한 경우에는는 理事會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週間 前에 公告한 후 3 月을 超過하지 않는 일정한 期間에 걸쳐 名義改書 等を 停止하거나 基準日을 定할 수 있다. 그러나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는 名義改書의 停止와 基準日을 함께 定할 수 있다. (1989. 8. 14 本 項 新設)

第 3 章 社債

第 15 條(轉換社債의 發行)①會社는 社債의 額面總額이 4,000 億원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株主外의 者에게 轉換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1996. 3. 15 本 項 改正)

②第 1 項의 轉換社債에 있어서 理事會는 그 一部에 대하여만 轉換權을 부여하는 條件으로도 이를 發行할 수 있다.

③轉換으로 인하여 發行하는 株式은 社債額面 總額 中 3,000 億원은 普通株式으로, 1,000 億원은 優先株式으로 하고, 轉換價額은 株式의 額面金額 또는 그 이상의 價額으로 社債發行 時 理事會가 定한다.

(1996. 3. 15 本 項 改正)

④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은 當該 社債의 發行日後 1 月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償還期日의 直前日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期間內에서 理事會의 決議로써 轉換請求期間을 調整할 수 있다.

⑤第 1 項의 轉換社債에 있어서 株式으로의 轉換에 의하여 發行된 株式에 대한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에 관하여는 轉換을 請求한 때가 속하는 直前 營業年度 末에 株式으로 轉換된 것으로 한다.(1996. 3. 15 本 項 改正)

第 16 條(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①會社는 社債의 額面總額이 4,000 億원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株主 外의 者에게 新株引受權附社債를 發行 할 수 있다.(1996. 3. 15 本 項 改正)

②新株引受를 請求할 수 있는 金額은 社債의 額面總額을 초과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理事會가 定한다.

③新株引受權의 行使로 發行하는 株式은 社債額面 總額 中 3,000 億원은 普通株式으로, 1,000 億원은 優先株式으로 하고, 그 發行價額은 額面金額 또는 그 以上の 價額으로 社債發行 時 理事會가 定한다.

(1996. 3. 15 本 項 改正)

④新株引受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期間은 當該 社債發行日後 1 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償還期日의 直前日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期間 內에서 理事會의 決議로써 新株引受權의 行使期間을 調整할 수 있다.

⑤第 1 項의 新株引受權附社債에 있어서 新株引受權을 行使한 者에 대한 利益이나 利子の 配當에 관하여는 新株의 發行價額의 全額을 納入한 때가 속하는 直前 營業年度 末에 新株가 發行된 것으로 한다.

(1996. 3. 15 本 項 改正)

第 17 條(社債發行에 관한 準用規定)第 12 條, 第 13 條의 規定은 社債發行의 경우에 준용한다.(1996. 3. 15 本 條 改正)

第 17 條의 2(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 3. 23 本 條 新設)

第 4 章 株主總會

第 18 條(株主總會의 區分)①會社의 株主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눈다.

②定期總會는 會社의 事業年度 終了의 3 月 이내에, 臨時總會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1994. 7. 7 本 項 改正)

第 19 條(召集)① 株主總會의 召集은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代表理事가 召集한다.(1989. 8. 14 本 項 改正)

②代表理事의 有故 때에는 第 35 條 第 2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1989. 8. 14 本 項 改正)

第 20 條(召集通知 및 公告)①株主總會를 召集함에는 그 日時, 場所 및 會議의 目的事項을 總會日 2 週間 前에 各 株主에게 書面 또는 電子文書로 通知書를 發送하여야 한다. (2002. 3. 8 本 項 改正)

②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의 100 分の 1 以下の 株式을 所有한 株主에 대한 召集通知는 2 週間 前에 株主總會를 召集한다는 뜻과 會議 目的事項을 서울特別市에서 發刊하는 韓國經濟新聞과 每日經濟新聞에 各各 2 回 以上 公告하거나 關聯 法令이 정하는 電子的 方法으로 公告함으로써 書面 또는 電子文書에 의한 召集通知에 갈음할 수 있다.

(2013. 3. 22 本 項 改正)

第 21 條(召集地)株主總會는 本社 所在地에서 開催하되 必要에 따라 이의 隣接地域에서도 開催할 수 있다.(1989. 8. 14 本 條 改正)

第 22 條(議長)株主總會의 議長은 代表理事가 되고 代表理事가 有故 時에는 事前에 理事會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議長이 된다.(1994. 7. 7 本 條 改正)

第 23 條(議長の 秩序維持權)①株主總會의 議長은 株主總會에서 故意로 의사진행을 妨害하기 위한 言行을 하거나 秩序를 紊亂케 하는 者에 對하여 發言의 停止, 取消 또는 退場을 命할 수 있으며, 그 命을 받은者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1998. 3. 27 本 項 改正)

②株主總會의 議長은 圓滑한 議事進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株主의 發言의 時間 및 回數를 制限할 수 있다.(1998. 3. 27 本 項 新設)

第 24 條(議決權)株主總會에서의 株主는 自己名義로 登錄된 株式 壹株마다 壹個의 議決權을 가진다.

第 25 條(相互株에 대한 議決權 制限)會社, 母會社와 子會社, 또는 子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 分の 1 을 超過하는 株式을 가지고 있는 境遇 그 다른 會社가 가지고 있는 이 會社의 株式은 議決權이 없다. (1989. 8. 14 本 條 改正)

第 26 條(議決權의 不統一 行使)①2 以上の 議決權을 가지고 있는 株主가 이를 統一 하지 아니하고 行使하고자 할 때에는 會日의 3 日前에 會社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뜻과 理由를 通知하여야 한다.(1989. 8. 14 本 項 改正)

②會社は 株主의 議決權의 不統一 行使를 拒否할 수 있다. 그러나 株主가 信託을 引受하였거나 其他 他人을 爲하여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9. 8. 14 本 項 改正)

第 27 條(議決權의 行使)①株主는 代理人에 의해서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②代理人은 會社의 株主에 限하며, 그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株主總會 開始 前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株主가 法人인 경우의 代理人은 그 法人의 代表로부터 委任을 받은 당해 法人의 任職員에 限한다.(1994. 7. 7 本 項 改正)

第 28 條(議決事項)(1994. 7. 7 削除)

第 29 條(株主總會의 決議方法)株主總會의 決議는 法令에 다른 正함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出席한 株主의 議決權의 過半數와 發行株式 總數의 4 分の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1996. 3. 15 本 條 改正)

第 30 條(株主總會의 議事錄)株主總會의 議事는 그 經過의 要領과 結果를 議事錄에 記載하고 議長과 出席한 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 本社와 支社에 備置한다. (1996. 3. 15 本 條 改正)

第 5 章 理事(2000. 3. 17 改正)

第 31 條(理事의 數)①會社의 理事는 3 人 以上 12 人 以下로 하며 全體 理事 數의 過半數의 社外理事를 둔다.(2005. 3. 11 本 項 改正)

②(2000. 3. 17 削除)

第 32 條(理事의 選任)①理事는 株主總會에서 選任한다.(2000. 3. 17 本 項 改正)

②理事의 選任은 出席한 株主의 議決權의 過半數와 發行株式 總數의 4分之 1 以上の 數로 한다.(2000. 3. 17 本 項 改正)

③理事 選任 時 商法 第 382 條의 2 에 의한 集中投票의 方法은 適用하지 아니한다.(1999. 3. 20 本 項 新設)

④(1994. 7. 7 削除)

⑤理事는 常任理事 및 非常任 理事와 常務에 從事하지 않는 社外理事로 한다. (1998. 3. 27 本 項 新設)

⑥(2000. 3. 17 削除)

第 32 條의 2(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①社外理事를 추천하기 위하여 理事會 內에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를 둔다.

②社外理事는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자 中에서 選任한다.

③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는 2 人 이상의 理事로 구성하되 社外理事가 2分之 1 以上 包含되어야 한다.

④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별도로 정한다.(2000. 3. 17 本 條 新設)

第 32 條의 3(理事의 資格)①다음 各 號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會社의 理事가 될 수 없으며, 理事가 된 後에 이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 職을 喪失한다. (2000. 3. 17 本 項 改正)

1. 會社와 競爭關係에 있는 會社를 支配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이하 “公正去來法”이라 한다)”상 同一人 및 그 同一人 關係者 (但, 會社와 同種營業을 영위하는 會社라 할지라도 會社와 公正去來法上 동일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는 競爭關係에 있는 會社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2000. 3. 17 本 號 改正)

2. 會社와 競爭關係에 있는 會社 및 그와 公正去來法 上 동일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의 任·職員 또는 최근 2年이내에 任·職員이었던 자 (2000. 3. 17 本 號 改正)

3. 會社와 競爭關係에 있는 會社의 最大株主 또는 2 大株主인 會社 및 그와 公正去來法 上 동일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의 任·職員 또는 최근 2年이내에 任·職員이었던 자.(2000. 3. 17 本 號 改正)

②會社의 社外理事는 經營, 經濟, 會計, 法律 또는 關聯技術 등에 관한 專門知識이나 經驗이 풍부한 자로서 會社의 발전과 株主의 權益保護에 기여할 수 있는 者이어야 하고, 商法, 기타 관련 法令 上 社外理事의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자는 會社의 社外理事가 될 수 없다.

(2012. 3. 23 本 項 改正)

③會社의 社外理事가 第1項 各 號 또는 第2項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때부터 그 職을 喪失한다. 이때 缺員이 생긴 社外理事는 그 사유가 發生한 이후 최초로 召集되는 株主總會에서 選任한다. (2000. 3. 17 本 項 改正)

第 33 條(理事의 任期)代表理事를 포함한 理事의 任期는 就任 後 開催되는 第 3 次 定期株主總會의 終了時에 滿了된다.(2001. 3. 16 本 條 改正)

第 34 條(理事의 缺員과 補選)①理事가 다음 各 號의 1 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缺員으로 본다.(2000. 3. 17 本 項 改正)

1. 死亡한 때
2. 破産이 宣告된 때
3.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이 宣告된 때
4. 禁錮以上の 刑의 宣告가 確定된 때

②理事가 缺員되었을 때는 臨時株主總會를 召集하여 補缺選任한다. 그러나 法定員數가 되고 또한 業務執行 上 支障이 없을 때에는 補缺 選任을 留保 또는 다음 定期株主總會 時까지 延長할 수 있다. (2000. 3. 17 本 項 改正)

③補缺과 增員에 의하여 選任된 理事의 任期는 就任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2000. 3. 17 本 項 改正)

第 35 條(理事의 職務)①會社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理事 中에서 代表理事 1 人 以上을 選任하며, 代表理事는 會社를 代表하고 업무를 總括한다. (1994. 7. 7 本 項 改正)

②理事는 代表理事를 補佐하고, 理事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會社의 業務를 分掌 執行하며, 代表理事 有故 時에는 理事會規程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1994. 7. 7 本 項 改正)

第 35 條의 2(理事의 報告義務)理事는 會社에 現저하게 損害를 미칠 염려가 있는 事實을 發見한 때에는 즉시 監査委員會에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2000. 3. 17 本 條 改正)

第 35 條의 3(理事의 充實義務)理事는 會社의 利益을 위해 充實히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2000. 3. 17 本 條 改正)

第 36 條(監事의 職務)(2000. 3. 17 削除)

第 37 條(監事의 監査錄)(2000. 3. 17 削除)

第 38 條(任員의 缺格事由)(1994. 7. 7 削除)

第 39 條(職員의 身分保障)會社의 職員은 人事規程으로 정하는 免職事由 또는 職權免職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身分을 保障한다.
(1994. 7. 7 本 條 改正)

第 40 條(代表理事의 代表權制限)(1994. 7. 7 削除)

第 41 條(代理人)代表理事는 法令이나 定款으로 禁止하지 아니한 事項에 限하여 職員 中에서 會社의 業務에 관한 裁判 上 또는 裁判 外의 行爲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1994. 7. 7 本 條 改正)

第 42 條(顧問 等)代表理事는 會社의 業務運營에 관한 重要事項에 대한 諮問을 얻기 위하여 顧問이나 諮問機關을 들 수 있다.(1994. 7. 7 本 條 改正)

第 6 章 理事會

第 43 條(構成)理事會는 理事로 構成하며, 會社業務의 重要事項을 決議한다.

(1994. 7. 7 本 條 改 正)

第 44 條(理事會의 召集)①理事會는 代表理事가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理事 3 人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 代表理事가 召集한다.

(1994. 7. 7 本 項 改 正)

②召集權者로 指定되지 않은 다른 理事는 召集權者인 理事에게 理事會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召集權者인 理事가 正當한 理由없이 理事會 召集을 拒絶하는 境遇에는 다른 理事가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2002. 3. 8 本 項 新 設)

③理事會의 召集은 會議開催 2 日 前까지 會議 目的事項을 記載한 通知書를 各 理事에게 發送하여야 한다.(2002. 3. 8 本 項 改 正)

④理事會는 理事全員의 同意가 있을 때에는 第 3 項의 節次를 省略할 수 있다.(2002. 3. 8 本 項 改 正)

第 45 條(理事會의 議決方法)①理事會의 議決은 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②理事會의 決議에 特別한 利害關係가 있는 理事는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第 45 條의 2(社外理事 過半數의 事前承認을 要하는 事項)定款의 다른 規定에 不拘하고, 會社는 다음 각 호의 事項에 대하여는 社外理事 過半數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1998. 3. 27 本 條 新 設)

1. 會社가 會社의 最終의 貸借對照表에 의하여 會社에 現存하는 自己資本의 100 分の 5 以上 外國法人 또는 團體의 株式·出資持分 其他 海外資産을 取得하거나 會社의 子會社로 하여금 위 株式·出資持分 其他 海外資産을 取得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2.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關한法律 上 會社의 系列會社에 대하여 單一 또는 繼續去來를 通하여 100 億원 以上の 出資, 資金貸與, 保證, 資産取得 및 이와 類似한 去來를 하고자 하는 경우

第 46 條(機能)(1994. 7. 7 削除)

第 46 條의 2(內部去來節次)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關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 間 去來의 公正性을 擔保하기 위한 內部去來節次에 관한 規程은 理事會에서 制·改正한다.(1998. 3. 27 本 條 新設)

第 47 條(運營)理事會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規程으로 定한다.

第 47 條의 2(監査協議會)(2000. 3. 17 削除)

第 47 條의 3(監査委員會)①會社는 理事會 內에 監査委員會를 둔다.

②監査委員會는 3 人 以上の 理事로 구성하되 委員의 3 分の 2 이상을 社外理事로 한다.

③監査委員會의 委員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運營에 관한 사항은 理事會에서 별도로 定한다.(2012. 3. 23 本 項 改正)

(2000. 3. 17 本 條 新設)

第 48 條(理事會 議事錄)理事會의 議事에 關하여 案件, 經過要領, 그 結果, 反對하는 자와 그 反對事由를 기재한 議事錄을 作成하고 議長과 出席한 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 本社에 備置한다.(2000. 3. 17 本 條 改正)

第 49 條(理事의 報酬와 退職金)①理事의 報酬는 株主總會의 決議로 定한다.
(2000. 3. 17 本 項 改正)

②理事의 退職金의 支給은 株主總會 決議를 거친 任員報酬 支給規程에 依한다.(2000. 3. 17 本 項 改正)

第 49 條의 2(社外理事의 處遇)社外理事에게는 業務遂行에 必要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2000. 3. 17 本 項 改正)

第 7 章 計算

第 50 條(事業年度)會社의 事業年度는 每年 1 月 1 日부터 12 月 31 日까지로 한다.(1988. 8. 14 本 條 改正)

第 51 條(金庫)(1994. 7. 7 削除)

第 52 條(財務諸表와 營業報告書의 作成 備置 等)①代表理事는 定期株主總會 會日의 6 週間 前에 다음의 書類와 그 附屬明細書 및 營業報告書を 作成하여 監査委員會의 監査를 받아야 하며, 다음 各號의 書類와 營業報告書を 定期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2000. 3. 17 本 項 改正)

1. 貸借對照表
2. 損益計算書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2012. 3. 23 本 號 改正)

②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2012. 3. 23 本 項 新設)

③監査委員會는 第 1 項의 書類를 받은 날로부터 4 週間 內에 監査報告書를 代表理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2012. 3. 23 本 項 改正)

④代表理事는 第 1 項 各 號의 書類를 營業報告書 및 監査報告書와 함께 定期株主總會 會日의 1 週間 前부터 本社에 5 年間, 그 謄本을 支社에 3 年間 備置하여야 한다.(2012. 3. 23 本 項 改正)

⑤代表理事는 第 1 項 各 號의 書類에 대한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遲滯없이 貸借對照表와 外部監査人 監査意見을 公告하여야 한다.(2012. 3. 23 本 項 改正)

第 53 條(剩餘金の處分)會社は 每 事業年度の 處分前利益剩餘金を 다음과 같이 處分한다.(1997. 3. 21 本 條 改正)

1. 利益準備金 : 金錢에 의한 純利益 配當 額의 10 分の 1 이상
2. 其他 法定積立金
3. 株主配當金
4. 任意積立金
5. 任員賞與金
6. 其他 利益剩餘金處分額
7. 次期移越利益剩餘金

第 54 條(利益配當)①利益의 配當은 株主에게 金錢과 株式으로 할 수 있다.

(1994. 7. 7 本 項 改正)

②利益의 配當을 株式으로 하는 경우 會社가 數種의 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議로 配當할 新株의 種類를 決定할 수 있다.

(1996. 3. 15 本 項 新設)

③第 1 項의 配當은 每 決算期 末 現在의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 또는 登錄된 質權者에 支給한다.(1989. 8. 14 本 項 新設)

④第 1 項의 配當金은 支給開始한 날로부터 5 年안에 그 支給請求가 없을 때에는 그 請求權을 拋棄한 것으로 보아 이를 會社의 所得으로 處理한다.

(1989. 8. 14 本 項 改正)

第 54 條의 2(中間配當)①會社는 事業年度 中 1 회에 한하여 6 月 30 日을 基準日로 하여 理事會의 決議로써 金錢으로 利益을 配當할 수 있다.

②第 1 項에 의한 中間配當을 支給할 수 있는 金額 限度, 配當金의 支給 時期 등 諸般 關聯 事項은 商법 등 關聯 法令에 의한다.(2012. 3. 23 本 項 改正)

③中間配當을 할 때에는 第 8 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株式에 대하여도 普通株式과 同一한 配當率을 適用한다.

④第 10 條의 2 및 第 54 條의 第 4 項은 本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準用한다.

(2004. 3. 12 本 條 新設)

第 8 章 補則

第 55 條(秘密嚴守의 義務)①會社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에 關하여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안 된다.(1998. 3. 27 本 項 改正)

②會社의 任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經營에 關한 事項을 任意로 外部에 漏泄하거나 盜用하는 경우에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1998. 3. 27 本 項 新設)

附 則<변경 제 5 호(1989. 8. 14)>

第 1 條(施行日)이 定款은 1989 年 8 月 14 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社規)當 會社業務推進과 經營을 위하여 必要한 社規는 理事會에서 決定·施行한다.

第 3 條(規定 外 事項)이 定款에서 規定되지 않은 事項은 株主總會決議와 商法 其他 法令에 따른다.

附 則 <변경 제 6 호(1991. 3. 15)>

이 定款은 1991 年 3 月 15 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제 7 호(1992. 3. 20)>

이 定款은 1992 年 3 月 20 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제 8 호(1994. 7. 7)>

이 定款은 1994年 7月 7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제 9 호(1996. 3. 15)>

第 1 條(施行日)이 定款은 1996年 3月 1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 10 條의 2, 第 13 條, 第 17 條, 第 29 條, 第 30 條, 第 32 條, 第 33 條, 第 35 條의 2, 第 36 條, 第 37 條, 第 48 條, 第 54 條의 改正規定은 1996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監事の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이 定款 施行當時 在任 中인 會社の 監事の 任期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변경 제 10 호(1997. 3. 21)>

이 定款은 1997年 3月 2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제 11 호(1998. 3. 27)>

第 1 條(施行日)이 定款은 1998年 3月 27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社外理事 選任에 關한 經過措置)第 31 條 第 1 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第 15 期 定期株主總會 前까지는 3 人 以下의 社外理事를 選任할 수 있다.

附則 <변경 제 12 호(1999. 3. 20)>

第 1 條(施行日)이 定款은 1999 年 3 月 20 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新株發行)會社는 1999 年 6 月 17 일까지 普通株式 160,210 株를 發行한다.

第 3 條(新株發行 方法 等)附則 第 2 條의 新株發行 時 會社는 本文 第 10 條 第 1 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電氣通信事業法 第 6 條 第 3 號에 따라 一定限度 以上 會社의 株式取得이 制限되는 外國人에 해당되지 않는 株主에게만 그 所有한 株式 數에 比例하여 新株를 配定한다. 다만, 그 發行價額, 引受方法 등은 理事會 決議로 정한다.

第 4 條(經過規定)本文 第 32 條 第 3 項의 規定은 2003 年 定期株主總會 前日까지 效力을 가진다.(2000. 3.17 本 條 改正)

附則 <변경 제 13 호(2000. 3. 17)>

第 1 條(施行日)이 定款은 2000 年 3 月 17 日부터 施行한다. 但, 第 31 條의 改正規定은 2000 事業年度 終了 後 최초로 소집되는 定期株主總會 時부터 適用한다.

第 2 條(新株의 제 3 者 配定)本文 第 10 條 제 1 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會社는 2000 年 내에 新株 579,492 株(額面價 5 仟원 기준)를 1 回 또는 數回 分割하여 理事會의 決議로 第 3 者 配定方式으로 浦項綜合製鐵(株)에 配定할 수 있다.

附 則 <변경 제 14 호(2001. 3. 16)>

第 1 條(施行日)이 定款은 2001 年 3 月 16 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理事任기에 관한 經過規定)第 33 條의 規定은 本 定款 施行前에 選任된 理事에 대해서도 適用된다.

附 則 <변경 제 15 호(2004. 3. 12)>

第 1 條(施行日)이 定款은 2004 年 3 月 12 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제 16 호(2005. 3. 11)>

第 1 條(施行日)이 定款은 2005 年 3 月 11 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제 17 호(2006. 3. 10)>

第 1 條(施行日)이 定款은 2006 年 3 月 10 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제 18 호(2008. 3. 14)>

第 1 條(施行日)이 定款은 2008 年 3 月 14 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제 19 호(2010. 3. 12)>

第 1 條(施行日)이 定款은 2010 年 3 月 12 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제 20 호(2011. 8. 31)>

第 1 條(施行日)이 定款은 2011 年 10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제 21 호(2012. 3. 23)>

第 1 條(施行日)이 정관은 2012 年 3 月 23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7 조의 2, 제 52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2 항의 개정내용은 2012 年 4 月 15 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변경 제 22 호(2013. 3. 22)>

第 1 條(施行日)이 정관은 2013 年 3 月 22 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변경 제 23 호(2014. 3. 21)>

第 1 條(施行日)이 정관은 2014 年 3 月 21 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변경 제 24 호(2015. 3. 20)>

第 1 條(施行日)이 정관은 2015 年 3 月 20 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변경 제 25 호(2016. 3. 18)>

第 1 條(施行日)이 정관은 2016 年 3 月 18 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변경 제 26 호(2017. 3. 24)>

第 1 條(施行日)이 정관은 2017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